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20
----------	-------

발의연월일 : 2025. 8. 18.

발 의 자 : 진선미 · 이기현 · 조계원
이학영 · 문정복 · 강경숙
이건태 · 최혁진 · 양문석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진료기록부는 10년간 보관해야 하며,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진료기록부등은 관할 보건소에 이관하도록 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환자 권익 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령에서는 폐업·휴업 예정일 14일 전까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및 사본 발급에 관한 사항 등을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복지부령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에게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안내 관련 내용이 제대로 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의료기관 폐업·휴업 이후 진료기록부등의 보건소 이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폐업·휴업 이후 환자들이 사실상 진료기록부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관련 사항을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직접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4항).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중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
2. 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내하는 조치. 이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안내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조치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 ③ (생략) ④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는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등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40조(폐업·휴업의 신고)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u>----- -----. 1. <u>해당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조치</u> 2. <u>폐업·휴업 예정일, 진료기록부등의 이관·보관 또는 사본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진료비 등의 정산 및 반환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안내하는 조치. 이 경우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진료를 받은 환자에게는 전화통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직접 안내하여야 한</u>

<u><신 설></u> ⑤ (생 략)	<u>다.</u> <u>3.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u> <u>정하는 조치</u> ⑤ (현행과 같음)
-----------------------------------	---